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에 관한 小考

車 詰 杓

(釜山水産大學校)

I. 머리 말

內水面이라 함은 河川·댐·湖沼, 그리고 貯水池 기타 인공적으로 조성된 淡水나 汽水의 水流 또는 水面을 말하고, 內水面漁業은 이러한 수면에서 행하는 각종 어업을 말한다.

우리 나라 內水面漁業은 낚시꾼의 낚시질과 현지 주민의 소규모 어업, 食用魚 및 觀賞魚類를 생산하는 養殖業 등으로서 농어의 부업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을 고비로 內水面漁業은 科學技術의 발달과 경제 성장에 힘입어 有用資源의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면이 늘어남과 동시에, 養殖技術의 발전과 養魚家의 창의적 노력에 의한 生産技術 및 경영의 향상, 國民經濟의 성장에 따른 高級食品의 需要加增 등이 그것의 이용 확대를 가속화시켰다. 그리하여 內水面의 종합적인 개발과 水産資源의 保護育成을하여 농·어민의 所得増大를 목적으로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內水面漁業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의 水産物需要増大는 물론이고, 國民生活水準의 향상으로 遊漁人口가 급증하고, 副業的 漁業에서 專業的인 企業形態의 內水面漁業者가 증가함에 따라 內水面漁業制度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행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이 갖는 구체적인 법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內水面에서의 漁業秩序를 유지하고 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은 內水面의 특성이 여러 측면에서 일반 해면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水産業法에 따른다고 단순하게 규정¹⁾하였을 뿐만 아니라, 內水面의 범위에 관해 분명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둘째, 內水面은 육상에서 배출되는 廢棄物이나 기타 汚染物質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水質汚染으로 인해 어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漁業活動에 기인하여 초래되는 水質汚染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1) 國際聯合食糧農業機構(FAO)에서도 1987년 12월 이후부터 漁業과 養殖業으로 구분하여 水産統計를 작성하고 있을 정도로 養殖業은 水産業의 중요한 분야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水産業法에서는 아직도 水産業을 漁業과 製造業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또한 養殖業이 內水面漁業을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은 제16조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水産業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水産業法의 特別法의 地位에 있다.

셋째,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에는 漁業被害 補償制度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水産業法 제8장 규정을 원용하더라도 水産業法이 정하고 있는 漁業被害 補償規定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漁業被害補償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넷째, 國民生活水準 향상으로 遊漁人口가 급증하고 있으나, 遊漁行爲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을 뿐, 이들 遊魚者의 法的地位問題와 遊漁規制問題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과 日本漁業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內水面漁業制度를 비교·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한 立法論的 解決策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の 意義 및 特質

1. 意義

經濟發展과 더불어 대규모 다목적 댐, 인공 호수의 축조 등으로 유용한 어류의 적극적인 자원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면이 늘어나는 한편, 養殖技術의 발달과 보급으로 內水面漁業에 종사하는 漁業者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內水面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水産資源의 保護育成을 도모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35호로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을 제정 공포하여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內水面漁業에 대하여 水産業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內水面漁業의 확장에 수반되는 각종 法律問題, 財政支援問題, 技術開發 및 指導問題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水産業法과는 별도로 독립 입법을 단행하였다.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은 水産業法과는 달리 內水面漁業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內水面의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며, 水産資源의 보호 육성을 도모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 따라서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은 정부로 하여금 어업의 개발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내수면 자원의 증대, 생산성의 향상, 생산물의 이용·가공 등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試驗研究事業을 조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 자치 단체도 정부 시책에 준해서 그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또한 水産廳長은 內水面漁業의 개발 촉진을 위해서 ① 內水面開發地域의 지정 ② 자원의 조성 및 보호 ③ 淡水魚의 생산 및 수출 진흥 ④ 시험 연구 사업의 조성 ⑤ 養魚技術의 개발 및 지도 보급 ⑥ 건전한 낚시 풍토 조성 사업을 포함한 內水面漁業開發의 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漁業者는 그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① 河川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② 河川法 제25조에 의한 허가 ③ 특정 다목적댐법 제3조에 의한 河川占有權 ④ 農村近代化促進法 제158조의 4에 의한 사용 승인 ⑤ 公有水面

2) 水産業法の 立法目的은 水産業에 관한 基本制度를 정하여 水産資源을 보호 육성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水産業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다.

3)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제2조.

管理法 제4조에 의한 점유 및 사용에 관한 허가, 승인 또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하고 있다⁴⁾.

2. 適用範圍

이 법이 적용되는 수면은 內水面이고, 內水面은 公共水面⁵⁾과 私有水面으로 구분되며, 이 경우 公共水面이 아닌 內水面에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⁶⁾, 公共水面이 아닌 수면이 公共水面과 연결하여 하나가 된 內水面⁷⁾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公共水面과 연결하여 하나가 된 私有水面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道知事의 허가를 받아 內水面漁業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⁸⁾하지 않는 경우에는 內水面漁業을 행할 수 있다.

또 이 법은 일반 법률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漁業者, 非漁業者의 구별없이 적용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국내 및 국외의 모든 韓國民과 大韓民國 法人을 말하며, 우리 나라 關係法令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 또는 신고가 수리되어 어업을 하고자 하는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도 포함된다.

이 법에서 河川에 대한 규정이 없고 河川法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河川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담수와 해수가 혼재하는 강 하류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가 河川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內水面漁業은 항행이 가능한 河川 등에서의 어업과 그 이외의 河川에서의 어업으로 구분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바다로 유입되는 河川에 있어서 內水面漁業과 海面漁業間的 한계는 염분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으며, 물의 염분이 없어지는 점의 하류는 海洋管理의 대상 수역이고, 이 한계선의 상류는 內水面漁業區域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⁰⁾.

일본의 경우는 漁業法上 內水面의 범위를 어업의 실태에서 해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湖沼와 순수한 內水面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그것을 공시하여 지정하고 있다¹¹⁾. 해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호소(琵琶湖(주변의 내호를 제외한다), 霞霞浦, 北浦, 浜名湖, 中海, 加茂湖, 猿潤湖, 厚岸湖 등)는 漁業法上 內水面으로 보지 않는다. 또 이와 반대로 해면이지만 폐쇄적인 해면이기 때문에 久美浜灣, 與謝海 등과 같이 호소에 준한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다¹²⁾.

內水面漁業은 海面漁業과 마찬가지로 免許漁業과 許可漁業 및 申告漁業으로 나뉜다. 免許漁業에는 養殖漁業, 定置漁業, 共同漁業, 藻類採取漁業이 있고, 許可漁業에는 刺網漁業, 投網漁業, 種苗採取漁業, 주낙漁業, 魚箭漁業, 貝類採取漁業, 낚시業 등이 있다. 그리고 申告漁業은 免許漁業이나 許可漁業이 아

4)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제14조.

5) 公共水面이라 함은 公共用에 공하는 바다, 호소, 하천, 기타의 유수 또는 수면을 말한다.

6)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제3조의 2.

7) 公共水面과 연결한 일체의 非公共水面이라 함은 그 수면의 객관적 상태가 公共水面과 합하여 社會通念上 일체로서 인식되는 정도의 연결성을 갖는 수면, 즉 외관상 동일 수면을 형성하고 있는 公共用에 속하지 않는 수면을 말한다.

8)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제3조의 3.

9) 河川法 제2조 1항, 2항 참조.

10) 法制處, 各國의 水産業關係法, 法制資料 99輯, 1978, p. 100.

11) 日本漁業法 제6조 제5항 5호.

12) 日本漁業法 제127조의 증식 의무가 없는 공동 漁業權을 설정할 수 있고, 제129조의 遊漁規則을 제정하지 않아도 유어를 제한할 수 있다(金田禎之, 漁業法詳解, 成山堂書店, 1994, p.454. 佐藤隆夫, 日本漁業의 法律問題, 勤草書

닌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道知事에게 신고한 후 행하는 어업을 말한다.

3. 特 質

1) 水産業法과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內水面漁業이란 河川·댐·湖沼, 그리고 貯水池 기타 인공적으로 조성된 淡水나 汽水의 水流 또는 水面 등에서 행해지는 어업을 말하고, 海面漁業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성격이 현저하게 다른데,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內水面漁業은 海面漁業에 비해서 專業漁業者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경영 주체는 半農半漁의 성격을 띠고, 또 어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 水産動植物을 채포하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② 內水面資源은 海洋資源과 달리 증식이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이 특징이다. ③ 河川은 공공성이 강하고 漁業者 외에 광범위한 遊漁人口를 포함하고 있다. ④ 內水面漁業은 가뭄이나 홍수 등 기상 상태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 ⑤ 內水面은 해양과 달리 자정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內水面漁業은 水質汚染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內水面漁業의 法律關係는 海面漁業과는 별개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¹³⁾.

日本漁業法은 이 內水面漁業의 특성을 고려하여 內水面漁業 協同組合¹⁴⁾에 漁業權을 면허하고 여기에 資源增殖義務를 부과하여 자율적으로 內水面漁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漁業權자와 일반 遊漁者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都道府縣知事の 허가를 필요로 하는 遊漁規則을 제정하여, 이것에 의해 相互利害關係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民法規定의 援用

內水面이 비록 私有水面인 경우에도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효과로서 그 수면에서 자유로이 어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이러한 수면의 소유자 또는 그 부지의 소유자는 현저하게 권리를 침해받고 권리의 효과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漁業權을 면허할 때에는 이러한 수면의 소유자 또는 부지 점유자의 동의를 요함은 물론, 이러한 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行政官廳의 허가를 받아 어업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⁵⁾. 그러나 水産業法 제64조에서는 어장 표지의 설치, 어구 및 어업에 관한 신호를 하거나 이에 필요한 施設物을 설치 또는 어업에 필요한 표목을 보존 또는 설치하는 경우 市·道知事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 또는 공작물 기타 토지 정착물의 사용과 축목 또는 토석의 제거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에서는 어업에

13) 佐藤隆夫, 前掲書, p.157.

14) 하천의 協同組合은 일반의 協同組合과 달리 수의 사업은 거의 없으며, 실제로 하천의 管理團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천의 管理團體로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의 난점이 있기에, 協同組合의 형태를 빌려서 이것을 管理團體로 하고, 잡다한 하천의 이용자들을 組合員으로 하고 있다(佐藤隆夫, 前掲書, p.158.). 內水面에 있어서 일체의 어업이 조합에 의해서 관리됨과 더불어 協同組合이 增殖義務를 부담한다(日本漁業法 제5조 5항)는 것이 우리 나라 內水面漁業制度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15)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제3조 제3항.

관한 측량, 실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지장이 되는 죽목을 벌채할 수 있으며, 기타 妨害物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水産業法 제64조와 제65조의 규정은 타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앞에서 말한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제3조 3항과 충돌된다. 물론 이 두 규정은 市·道知事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양당사자의 權利行使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어항법 제16조와 같이 토지나 수면 등에 출입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所有者나 管理者에게 통보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使用料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內水面에 있어서 漁業權은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 취득된다. 이 경우에도 水産業法에서 규정하는 漁業權과 마찬가지로의 물권으로 하고 水産業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¹⁶⁾. 그러나 가뭄의 피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농지 개량 시설 본래의 목적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水面 管理者의 신청에 의하여 道知事는 어업 시설의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漁業者에게 명할 수 있으며, 漁業者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水面管理者는 농지 개량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집행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漁業權者가 받은 손실은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¹⁷⁾고 하는 것이 水産業法上的의 漁業權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Ⅲ. 內水面漁業의 種類

內水面漁業은 어업의 방법과 사용되는 어구에 따라 道知事의 면허를 받아 행하는 免許漁業과 道知事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許可漁業, 免許漁業이나 許可漁業 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道知事에게 신고하여 행하는 申告漁業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免許漁業

免許漁業은 일정한 수면을 독점 관리하면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行政處分의 바탕 위에서 행하는 어업이며, 어업의 면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漁業權이고, 이러한 漁業權의 특질은 단순히 수면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특정 수면, 수중, 수저에 있는 漁業權의 객체를 포획 또는 채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이다. 免許漁業이 권리에 기초하여 영위된다는 점에서 許可漁業이나 申告漁業과 다른 점이다¹⁸⁾.

內水面漁業 중 담수 조류 채취 어업을 1971년 1월 22일 水産業法 개정에서 免許漁業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개정은 漁業協同組合 관리 漁業權을 내수면까지 확대했던 것이다.

16) 水産業法 제15조 2항.

17)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제11조 3항, 4항.

漁業權은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水産業法 제 24조 2항과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漁業權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同法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水産業法上的의 漁業權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에 있어서 漁業權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때에 漁業權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¹⁸⁾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물권은 채권과 달라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이므로, 제3자가 그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즉 公示方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줄 뿐 아니라,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할 수 없다. 따라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한정하여 당사자에게 선택의 자유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²⁰⁾. 우리 민법이 物權法定主義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內水面漁業은 그 免許權者가 市·道知事이기 때문에 면허 구역이 시·도의 경계가 되는 河川인 경우에는 漁場區域을 중복하여 면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漁業權은 특정한 수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수면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漁業權이 존재하면 동일 어장에서는 다른 漁業權의 존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內水面漁業免許도 漁業權原簿나 그에 갈음하는 서류에 등록함으로써 漁業權의 존재 시기를 표시하여 漁業權 발생에 관한 분쟁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漁業權은 水産動物을 채취·포획 또는 양식하는 경제 활동을 그 권리의 내용으로 하므로 漁業權의 목적인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고, 따라서 漁業權은 하나의 財産權이다. 財産權은 자유로이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漁業權은 공권적 성격이 강한 사권이므로 양도나 담보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제한이 가해져 있고, 타인에 대한 대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²¹⁾. 그리고 漁業權은 물권으로서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배타적 지배권임을 본질로 하며, 타 물권과 같이 優先的의 效力과 物權的 請求權²²⁾이라는 권능을 갖는다.

1) 免許漁業의 種類

어업 중에는 지형이나 위치, 어구·어법에 따라 일정한 수면에서의 어업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수면에 어업자가 모이게 되고, 어장을 점용하기 위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 특정인에게 면허를 하고 피면허자로 하여금 그 어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배제하여 그 수면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免許制度의 목적이다.

우리 나라 漁業權制度는 일정 수면에서 모든 어업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無制限主義가 아니고 漁業

18) 차철표, 우리 나라 漁業權制度에 관한 研究, 法學研究 第6號 1號, 韓國海事法學會, 1994. p.222.

19) 水産業法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漁業權을 移轉 또는 分割 받은 자는 제16조의 漁業權原簿에 등록함으로써 漁業權을 취득한다”고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다.

20) 郭潤直, 物權法, 博英社, 1993, p.30.

21)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에서는 담보나 대부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이 법 제16조에 의해 水産業法 제18조(漁業權의 移轉·分割 또는 變更), 제19조(漁村契 등의 漁業權의 擔保禁止), 제32조(他人支配의 금지), 제33조(貸借의 금지 등)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22) 차철표, 앞의 논문, pp. 238~240 참조.

權의 내용이 채포물의 종류, 어법·어기 등에 의해 제한되는 制限主義를 채택하고 있다²³⁾. 따라서 免許漁業의 종류에는 公有水面 또는 開發地域으로 지정된 私有水面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하여 水産動植物을 양식하는 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定置漁具를 설치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定置漁業, 지역 주민의 共同利益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水産動植物을 조성·채포하는 共同漁業, 일정한 수면에서 水産廳長이 지정하는 조류를 조성·채취하는 藻類採取漁業이 있다.

2) 漁業免許의 申請

漁業免許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養殖漁業, 共同漁業, 藻類採取漁業에 있어서는 어장 구역마다, 定置漁業에 있어서는 어구 1구에 대하여 그 어구를 부설하고자 하는 수면을 구획하여 어업의 종류, 어구 또는 시설의 명칭,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 어업의 방법,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면허를 받고자 하는 기간,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 시장을 거쳐 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²⁴⁾. 또한 신청서에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사업 계획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²⁵⁾,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漁業免許 신청서에 그 지분과 대표자의 주소 성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漁業免許 신청서를 접수한 道知事は 농지 개량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 관리자와 협의하여 면허해야 한다. 면허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우선 순위²⁶⁾에 따라 면허해야 한다. 그러나 그 우선 순위는 內水面漁業의 특성상, 다시 말해서 새로운 대규모 댐이나 인공 호수 등은 오래 전부터 어장으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적용이 곤란하다. 또 제29조 1항 규정의 법인이 水産業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면허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어업의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면허하고 있고, 당해 수면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漁村契 또는 地區別組合에 한해 면허하고 있는 水産業法 제13조 규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29조 1항의 법인을 漁村契나 地區別組合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私有水面에 대한 養殖漁業免許

일정한 私有水面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養殖漁業을 경영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

23) 楊世植, 韓國水産法制(上), 第一文化社, 1987, p. 45.

24)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施行令 19조.

25)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협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로 갈음할 수 있다.

26) 漁業免許 및 허가의 優先順位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어장이 소재하는 地域漁民의 共同利益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기타 단체,
2. 신청한 어업과 동조의 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3. 內水面漁業開發 및 水産物輸出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4. 1호 내지 3호 이외의 자

우에는 養殖漁業을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식 시설의 기준은 2,300m² 이상의 양어장일 경우에는 사육지, 기은지, 실내 축양장, 용수 시설, 동력 시설, 폭기 시설, 사료 기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3,300m² 이상의 일반 양어장일 경우에는 산란지, 부화지, 치어 사육지, 친어지, 사료 기기, 용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²⁷⁾.

4) 免許의 制限

內水面에서는 어장 구역을 서로 중복하여 면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共同漁業의 어장 구역 내에 있어서는 자원의 상태, 어업의 시기와 채포물의 종류가 상이한 경우에 당해 漁業權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정치 어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구역 내에서 면허할 수 있고, 共同漁業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직한 단체에 한하여 어업 경영상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면허된다.

면허에 의해 영위되는 어업은 공익을 위하여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²⁸⁾. 즉 水産業法 제34조 제1항 각호²⁹⁾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연장 허가를 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일 경우, 면허 기간이 만료된 어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 관리되었거나 개발 실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行政官廳이 발한 水産動植物의 增殖計劃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어업을 제한하거나 또는 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어업 실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河川法 제68조 및 共有水面埋立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또는 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당해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³⁰⁾.

5) 免許漁業의 有效期間

養殖漁業의 有效期間은 10년, 定置漁業과 共同漁業 및 藻類採取漁業은 5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漁業免許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有效期間의 延長許可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월 사이에 그 기간을 정하여 道知事에게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漁業權者의 신청이 있을 경우 道知事는 水産業法에서 정하는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거나³¹⁾,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漁業行爲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이거나, 또는 免許期間이 만료된 어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 관리되었거나 개발 실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및 行政官廳에서 명령한 水産動植物의 증식

27)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施行令 20조.

28)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施行令 第30조.

29) ① 水産資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경우, ② 軍事訓練 또는 軍事施設의 보위상 필요한 경우, ③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 선박의 항행, 정박, 계류 또는 水底電線의 부설상 필요한 때, ⑤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 사업상 필요한 경우, ⑥ 漁業權者가 水産業法 또는 水産業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⑦ 漁業權者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기타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30)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施行令 第30조.

31) 水産業法 第34조 1항.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養殖漁業은 10년, 定置漁業과 藻類採取漁業은 5년의 기간 내에서 면허를 연장³²⁾하여야 한다.

2. 許可漁業

許可漁業은 漁業調整 및 水産資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어업을 특정의 사람에게 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³³⁾. 免許漁業은 漁業權에 기해서만 할 수 있는 어업인 데 비하여, 어업의 허가는 水産資源의 번식 보호 또는 어업 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에게 과해진 어업의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자연에 대한 어업 행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行政行爲이다. 어업의 허가는 특정인에 대한 일반적 금지의 해제 처분이므로 그 효과는 被許可者에 특유한 것이다. 따라서 허가는 이것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승계할 수 없다.

그러나 漁業許可의 본질은 자유 경쟁의 제한에 있으므로 어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초과 이윤을 발생케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어업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허가가 권리화하고 물권처럼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현실적으로도 관행상 그것은 漁業金融의 擔保力을 가지며, 債權保全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實定法上的 財産權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財産權이라고 할 수 있다.

1) 許可漁業의 種類

內水面漁業의 허가는 市長·道知事가 許可權者이나, 水産資源의 증식·보호·어업 조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道知事 許可漁業 이외의 어업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許可漁業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水産廳長에게 있다. 그러나 이것도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水産廳長의 권한이 水産業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위임되어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도별 허가 정한 수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허가 금지 사유, 우선 순위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道知事에게 그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도리어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방 실정과도 부합되므로 水産業法 제92조 및 동 시행령 제73조 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허가 권한은 道知事에게 위임되어 있다.

현행법에 따라 道知事が 허가하는 어업으로는 內水面에서 행하는 刺網漁業, 投網漁業, 주낙 어업, 양식을 목적으로 水産動植物의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河川을 차단하여 魚箭을 설치하고 어류를 채포하는 魚箭漁業, 內水面에서 桁網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패류 또는 기타 定着性 動物을 채포하는 貝類採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기타 시설을 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낚시업 등이 있다.

2) 漁業許可의 신청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漁業許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선마다, 어구를 사용하는 조업에 있어서는 어구마다, 種苗採捕漁業에 있어서는 養殖漁業免

32) 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기산일은 허가일에 불구하고 구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익일로 한다(內水面漁業의 면허 및 허가 등에 관한 사무 취급 규정 제15조 2).

33) 能勢幸雄, 漁業學, 水産科學シリーズ-2, 東京大學出版會, 1983, p.133.

許를 받은 자마다, 낚시업에 있어서는 수면마다 허가 신청서를 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漁業許可 신청서에는 어업의 종류 및 명칭,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어선 또는 어구의 규모(낚시업에 있어서는 시설의 규모), 어업의 시기, 채포물의 종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하며, 어선을 이용하는 조업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의 소유 또는 임차 관계 증명서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면 관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면 사용에 관한 동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3) 許可의 제한

어업을 자유로이 방임하면 水産動植物의 번식 보호 또는 어업 질서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道知事が 許可漁業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하고자 하는 사유, 어업 규모 및 방법, 어업의 명칭 및 내용, 대상 자원의 상태, 다른 어업과의 관계, 조업 구역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水産廳長에게 제출하여 水産廳長의 승인을 받아서 許可漁業에 대한 조업 구역, 허가의 정한수, 어업의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水産廳長의 승인을 득한 경우 道知事は 지체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 공익을 위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水産業法 제3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연장 허가를 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일 때, 개발 실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행정관청에서 발한 水産動植物의 증식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와 河川法 제68조³⁴⁾ 및 公有水面管理法 제13조 규정³⁵⁾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또는 댐 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할 때, 어업 실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이다.

3. 遊 漁

1) 遊漁의 意義와 法的 性質

遊漁란 어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자가 아닌 제3자가 레크레이션으로 水産動植物을 채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 遊漁는 漁業權에 기초하지 않아도 漁業活動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遊漁는 漁業權者의 受忍의 범위 내에서 水産業法 제33조의 賃貸借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당해 어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

漁業權은 일정 수면에서 특정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수면을 점유하는 권리로서 그 특정 수면, 수중, 수저에 있는 漁業權의 객체를 포획 또는 채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이다. 그런데 漁業權이 설정된 수역에서의 遊漁行爲는 어류가 해당 어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近接水面에서 행하는 漁業行爲로서 漁業權漁業을 현저하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漁業者와 遊漁者間의 조정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34) 하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하천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河川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5) 公有水面의 상황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 공공의 危害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토지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그러나 遊漁는 권리자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생기고, 遊漁가 형식적으로 권리의 침해가 되는 행위이면서도 권리자 측의 내제적 제약에 의해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 내제적 제약의 한도 내에서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일반 遊漁者와 漁業權者 사이에 일정한 法律效果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遊漁規則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漁業權者가 遊漁規則에 의하지 않고 遊漁를 제한해도, 그것은 법 제129조 위반으로 해서 법률상의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된다. 즉, 遊漁者에 대하여, 權利侵害로서 物權的 請求權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또 損害賠償도 청구할 수 없으며, 遊漁料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⁶⁾.

2) 遊漁規制

內水面漁業에 있어서 일반인의 遊漁는 漁業權者에 있어서 자원 분배, 어구 파손, 어장의 황폐화 등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다.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에서는 內水面 水産資源의 증식, 보호와 遊漁秩序確立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낚시 등 遊漁行爲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등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⁷⁾.

그러나 內水面漁業에 있어서 일반인의 遊漁가 漁業權者에 있어서 資源問題를 발생시키지만, 漁業權者로서도 內水面의 공공성 때문에 일반인의 遊漁를 완전히 거부할 수 없다. 결국 문제는 漁業權者와 遊漁者와 사이의 어업 조정이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日本漁業法은 漁業權者가 遊漁規則을 정하고, 遊漁者의 유어를 제한하려고 할 때는 遊漁規則에 따라 都道府縣知事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한다³⁸⁾. 그리고 이러한 遊漁規則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론상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그 중추가 되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① 漁業者에 의한 유어 거부의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內水面의 공공성에서 말하면 좁게 해석될 수 밖에 없고, 遊漁者가 漁業關係法令을 준수하지 않는 정도의 제한적으로 당연히 해석된다.

② 遊漁料의 적절한 액수의 산정이다. 이론적으로 생각한 경우, 遊漁料는 증식 및 관리를 위한 제경비의 분담에 이를 뿐이다. 즉 이 遊漁料의 성격은 이론상 權利侵害 인정으로 동반되는 일종의 수인료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3) 遊漁行爲의 制限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에서는 水産資源의 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 또는 유어 질서를 위

36) 佐藤隆夫, 前掲書, p.158.

37) 水産資源保護令 제14조에서도 漁業者가 아닌 자는 투망, 족대·반두·4수망, 1본조(대낚시 또는 줄낚시), 가리·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에 한한다.), 집게·갈구리, 손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으로 水産動物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8) 日本漁業法 제129조.

하여 ① 외줄 낚시(대낚시 또는 손줄 낚시). ② 작살. ③ 족대, 반두, 4수망. ④ 통발. ⑤ 집게, 갈고리. ⑥ 손 이외의 어구나 어법으로 어류를 채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담수산 새우를 채포할 경우에는 족대, 반두, 4수망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⁹⁾.

이러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어류들의 습성(빛, 음향 등)을 이용하거나 이 밖에도 먹이를 뿌리는 등 어류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써 행하게 되면 免許漁業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어망을 사용하여 漁業行爲를 하게 되면 漁道가 차단되거나 어류를 쫓는 결과가 되어 免許漁業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遊漁行爲는 금지되어 있다⁴⁰⁾.

① 보트를 사용하는 낚시 행위, 다만 낚시터의 여건 및 수면 상태를 감안하여 道知事의 신청에 의하여 水産廳長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② 水産資源保護令의 규정에 의한 採捕禁止期間 중에 있거나 採捕禁止體長에 해당하는 어류의 채포.

③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회귀 어종의 채포.

그러나 이와 같은 특정 행위만을 규제하는 것 보다는 내수면 이용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내수면의 관리를 조합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內水面資源의 증식은 물론, 내수면 이용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게 하고, 또한 그 組合員들에게 유어의 법적 지위(유어와 관련된 면허)를 보장하여 遊漁秩序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IV. 內水面開發審議會의 組織과 機能

內水面開發審議會는 內水面開發에 관한 시책의 수립에 있어서 水産廳長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水産廳에 설치되어 있다. 이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산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청 국장 중에서 水産廳長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경제기획원·농수산부·동력자원부 및 건설부의 2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추천한 각 1인과 水産業協同組合 中央會·농업진흥공사·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원 중에서 그 회장 또는 사장이 추천한 각 1인 및 內水面漁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의회의 조직은 行政機構의 조정으로 인하여 개정이 불가피해졌고, 오늘날 環境汚染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內水面漁業에 수반되어 기인하는 環境問題를 담당하는 기관의 公務員은 물론, 內水面漁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외에 현재 內水面漁業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위원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內水面漁場管理委員會가 內水面에 있어서 조정 및 행정청에 대한 자문, 건의 기구로

39)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施行令 제34조.

40)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施行令 제30조.

서, 都道府縣별로 內水面管理委員會가 있다⁴¹⁾. 위원회의 정원은 10명이고 知事が 임명한다. 그 구성에는 당해 都道府縣의 구역 내에 존재하는 내수면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都道府縣知事が 선임한 자, 당해 내수면에서 水産動植物을 채포하는 자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內水面管理委員會는 遊漁者도 포함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⁴²⁾. 이 委員會는 증식 대책을 수립하는 것, 또 타산업과의 조정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⁴³⁾.

內水面開發審議會는 內水面開發地域 指定計劃의 작성, 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許可漁業의 지정, 水面利用에 관한 협의 및 분쟁 조정, 기타 內水面漁業開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水産廳長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또 內水面漁業의 개발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함은 물론, 內水面 자원의 증대, 생산성의 향상, 생산물의 이용 및 가공 등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험 연구 사업 등을 심의한다.

水産業法에서는 海面漁業에 관한 조정·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中央水産調整委員會를, 市·道에 市·道水産調整委員會를 두고서 지역 특성에 맞는 水産業의 발전과 漁業秩序維持에 필요한 사항이나 어업에 관한 損失補償 또는 漁業紛爭에 관한 審議·調整을 수행하고 있으나,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에서는 水産廳에만 內水面開發審議會를 두고 있다. 內水面漁業이 전국 규모가 아니라 지역 중심의 소규모 어업이기 때문에 지방 실정을 잘 아는 전문인으로 구성된 內水面開發審議會를 각 시·도에도 설치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施策樹立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規定은 內水面開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水産資源을 보호 육성하고 농어민의 所得增大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내수면에 있어서 어업을 免許漁業, 許可漁業, 申告漁業으로 나누고, 면허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漁業秩序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內水面開發審議會의 조직과 임무 및 그 기능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內水面의 開發促進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함은 물론, 內水面資源의 증대, 생산성의 향상, 생산물의 이용 및 가공 등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은 농·어민의 所得增大를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면허 또는 허가 받은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많다. 그런데도 어업의 제한, 정지, 취소로 인한 어민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어업 부문에 관하여도 公共用地的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別法이나 土地收用法에서와 같이 어민들의 손실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 기준이나 절차가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1) 日本漁業法 제130조.

42) 日本漁業法 제131조.

43) 佐藤隆夫, 前掲書, p.157.

또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漁業權의 수면이 상수원일 경우 그 상수원에 의존하는 국민의 깨끗한 환경, 햇빛, 깨끗한 생활 용수나 식수 등의 生活利益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그 侵害行爲가 共同生活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不法行爲責任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⁴⁴⁾. 이것은 國民生活水準의 향상과 더불어 環境問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로 보아 漁業者와 인근 地域住民들과의 環境問題紛爭이 발생할 수 있고, 비록 行政官廳으로부터 면허나 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不法行爲責任을 져야 하는 不利益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면허나 허가 요건을 강화함은 물론, 엄격한 법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水産業法 제57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업 이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水産動植物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의 유어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유어는 자원 분배, 어구의 파손, 어장의 황폐화 등 漁業權漁業을 현저하게 방해함은 물론, 漁業權者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며, 環境破壞 및 漁業秩序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遊魚免許를 통한 遊魚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遊漁秩序維持를 위한 遊魚規則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이 형식상으로는 水産業法과 분리된 법령이기는 하나, 내면적으로는 水産業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水産業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따라서 내용이 같은 법을 두 개의 법으로 분리해 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水産業法처럼 內水面漁業을 水産業法상의 하나의 장으로 존치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水産業에 관한 종합적인 법전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參考文獻

- 法制處, 各國의 水産業關係法, 法制資料 99輯, 1978.
 郭潤直, 物權法, 博英社, 1993.
 李銀榮, 債權總論, 博英社, 1991.
 楊世植, 韓國水産法制(上), 第一文化社, 1987.
 車喆杓, 우리 나라 漁業權制度에 관한 研究, 法學研究 第6號 1號, 韓國海事法學會, 1994.
 咸榮來, 漁業補償에 관한 研究, 江陵大學校 法學碩士學位論文, 1993.
 宋俊燮, 內水面漁業 현황과 미래, 「水産振興」, 韓國水産振興會, 1987. 9/10.
 金仁培, 內水面養殖, 「水産産學」, 韓國水産學會, 1989. 10.
 能勢幸雄, 漁業學, 水産科學シリーズ-2, 東京大學出版會, 1983.
 金田禎之, 漁業法詳解, 成山堂書店, 1994.
 佐藤隆夫, 日本漁業의 法律問題, 勁草書房, 1978.
 水産法令研究會, 漁業基本制度法令集, 成山堂書店, 1988.

44) 李銀榮, 債權總論, 博英社, 1991, pp.166~167.